#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473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 윤호중 • 윤종군 • 홍기원

이기헌・조승래・이병진

정성호 • 권칠승 • 위성락

김영환 · 임호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총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가정양육 여건이 되지 않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지만 그만큼 돌보미 월급 등의 양육비로 지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따라서 가구의 양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벌이 가구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볼 수 있음. 또한, 출산 가능성이 있는 신혼부부나 20~30대 맞벌이가구의 비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맞벌이 가구의소득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맞벌이 가구의 소득요건과 소득에 따른 지급액 기준을 자녀

양육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28제1항 및 제100조의29제1항).

###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중 "이 절에서"를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홑벌이 가구	7천만원
맞벌이 가구	1억2천만원

제100조의2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나	4천만원 이상 1억2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4천만원) × 8천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30제3항에 따라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격) ①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	
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	
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	2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	
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	
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	
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	
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	
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	
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	
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	

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u>이</u>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 3.·4. (생략)

### ② ~ ⑦ (생 략)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 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 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 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 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 1. (생략)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٥]
 절과 제10절의4에서
<u>.</u>
3.·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①
·.
1. (현행과 같음)
9 여가 초소들의 항계액이 가

2.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가 구원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 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일 것 3.·4. (생략)

② (생 략)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 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 다.
- 1. (생략)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u>금</u>액

목 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나	2천500만 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4천500분의 50]

② (생략)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홑벌이 가구	7천만원
맞벌이 가구	1억2천만원

- 3.·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u>금</u>액

목 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나	4천만원 이상 1억2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4천만원) × 8천분의 50]

② (현행과 같음)